

# 발 간 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은 매우 특별한 분들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한중 무역고 1600억불, 투자규모 385억불, 인적교류 590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수교 15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기업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 변용을 구가하게 된 데에는 당연히 우리 기업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인들이야말로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외국기업임을 자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어 구사능력은 물론이고,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도 선뜻 나누어주고 중국인들에 대한 동지애로써 SARS 시에도 꺾이지 않고 중국친구들과 함께 中原을 지켰다는 사실을 많은 중국 친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기업들이 청산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때로는 불명예스럽게 세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여 우리 모두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의 기업 평균 수명이 15년이고, 124년 역사의 다우존스 지수 탄생시에 10대 기업에 들었던 기업중 현존하는 기업은 GE 1개사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 탄생, 성장, 소멸의 단계를 거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탄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멸할 때에도 축복받으며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본 책자는 우리 기업인들이 부득이 사업철수를 해야 하는 경우,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는 취지에서 발간하게 되었으며, ◆ 청산의 개요 ◆ 청산 사례, ◆청산의 주요Q&A 및 ◆ 참고자료로 구분하여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본 책자가 중국 땅에서 우리 기업을 경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중국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한중 간 우의를 증진하며 이해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인분들은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중국지역 공관, 대한상공회의소 및 국중건설링 김덕현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목 차

## I. 청산 개요 1

- 1. 청산제도의 목적 2
- 2. 청산법의 역사 3
- 3.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한 청산 법률 4
- 4. 회사법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5
- 5. 청산·파산 절차 6
- 6. 청산과 관련한 중국의 주무 관청 10

## II. 청산 사례 13

- 7. 산동성 기업 14
- 8. 광둥성 기업 16

## III. 청산의 주요 Q & A 17

### 기본 정보

- 9. (정의) 청산은 무엇이고, 해산은 무엇인가요? 18
- 10. (당위성) 청산은 꼭 해야만 하나요? 19
- 11. (사유)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청산하면 되는 건가요? 20
- 12. (청산인) 남에게(전문경영인, 변호사) 위임해서 청산할 수 있나요? 21
- 13. (청산이 아닌 방법) 청산을 해야 하는 회사가 M&A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2

14. (청산절차) 청산인이 약 4개월 동안 처리해야 할 업무는 무엇인가요?	23
15. (재산변제순위) 회사의 재산은 어떤 순서로 분배하나요?	24
16. (세금반환) 청산을 하면 이제까지 누려온 세금혜택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25
17. (영업)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죠?	26
18. (비용) 청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7
19. (대표처) 대표처도 청산을 하나요?	28
20. (파산, 회사정리, 화의) 파산, 회사정리, 화의란 무엇인가요?	29
21. (애로사항) 중국정부에서 청산, 파산을 안받아주면 어떻게 하나요?	30

### 잘못 알고 있는 정보

22. (취소, 철회) 영업집조가 吊銷(철회 또는 취소)되면 자동으로 청산된 거라 하던데?	31
23. (체불금) 회사의 체불된 세금, 임금 등을 꼭 갚아야 청산이 완료된다고 하던데?	32
24. (지급불능, 채무초과) 빚은 많고 갚을 돈이 없으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진다던데?	33
25. (출국금지) 회사의 관계자들은 청산이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갈 수 없다고 하던데?	34
26. (감금) 채권자, 노동자가 회사관계자를 감금하는 것은 정당한 자구행위라고 하던데?	35

## IV. 참고 자료 37

27. 주요 청산 지원 연락처	38
28. 체크 리스트	39
29. 용어 정의	42

# I

## 청산 개요

1. 청산제도의 목적
2. 청산법의 역사
3.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한 청산 법률
4. 회사법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5. 청산·파산 절차
6. 청산과 관련한 중국의 주무 관청

## 1. 청산제도의 목적

수명이 다 된 자동차는 아무리 외관 미화를 해보아도 폐차장행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를 폐쇄해야 할 경우에도 채무자가 임시적 방편으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잠적하여 버리거나 숨을 경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신용불량의 상태가 될 것이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뛰어 다닌다 하여도 채권자들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 갈 뿐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발생에 대하여 법은 청산이라는 제도를 두어 '합법적으로 빚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의 청산(清算)이란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 회사의 재산을 공정하게 산출하고 배당하여 채권자들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손실 배상을 해주고, 또한 그 회사에게는 그 많은 빚으로부터 책임을 면하게 해주어 재기의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2. 청산법의 역사

### 1986년 국유기업파산법 제정

중국의 파산제도와 파산법은 국유기업의 청산과정에서 처음 탄생하였습니다.

즉, 1994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약 5,493개의 국유기업을 정책적으로 파산시키고, 약 971만 근로자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한화 61조에 달하는 채권을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갚아주기 위하여 1986년 국유기업에만 적용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시행)”이 제정되어 정책적인 파산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유기업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했던 재정부, 돈을 빌려 준 중국 인민은행, 세금을 못 받고 있는 국가세무총국, 사법해석권을 갖는 최고인민법원 등은 통지(通知), 회신(復函), 회답(批復)의 형태로 정책성 관련 규정들을 제정한 것이 중국청산제도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 1996년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 제정

1996년 11월까지, 중국에서 비준을 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8만개였고, 그 48%인 13만개만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즉, 52%의 외국인투자회사는 청산을 하지 않고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1996년 “외상투자기업 청산방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청산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2007년 파산법 제정

국유기업 뿐만 아니라 비국유기업도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극에 달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0여년 동안 준비해 온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2007.6.1시행)”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모든 기업을 아우르는 법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3.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한 청산 법률

우리나라기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청산법률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등이 있습니다.

#### 청산 = 회사법

청산은 “외상투자기업청산관리방법”을 적용하였으나, 2008.1.15 위 청산관리방법이 폐지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 파산 = 파산법

1986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시행)”은 국유기업에만 적용되었고, 기타 사영기업 등 비국유기업은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19장 “기업법인 파산청산절차”에 따라 파산을 하였습니다. 2006.8.27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2007.6.1시행)”이 제정되면서 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시행)”과 민사소송법의 제19장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파산법에 따라 파산을 하여야 합니다.

## 4. 회사법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2008. 1. 15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이 폐지되고 회사법이 이를 대체하면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외자기업법 21조 및 그 실시세칙 제73조, 중외합자기업법실시조례 제91조, 제92조, 중외합작기업법 제23조 및 그 실시세칙 제49조 등의 청산 관련 규정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회사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거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법과 다른 법률(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회사법 제218조에 따라 “회사법과 외상투자 관련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73조에는 “종료일로부터 15일내에 대외에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법 제186조에는 “청산조 성립일로부터 10일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는 회사법이 아닌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73조에 따라 15일 내에 공고하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별법에는 있으나, 회사법에는 없고, 그 반대로 회사법에는 있으나 특별법에는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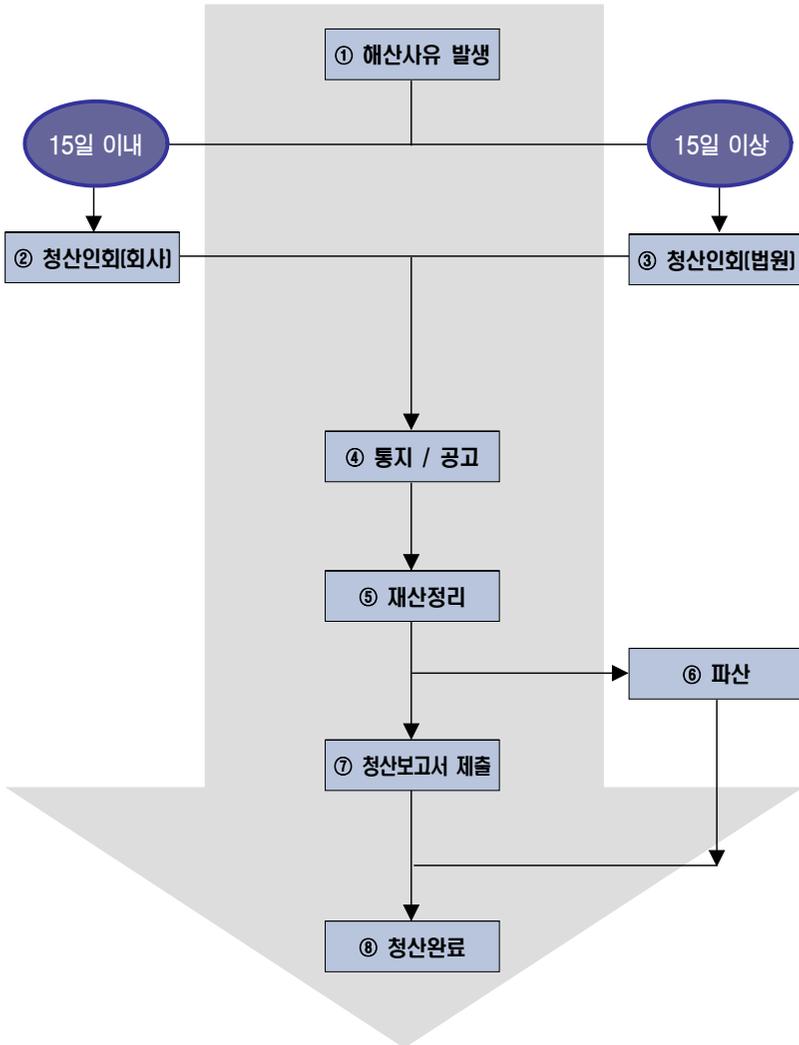
규정이 있는 법률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예로, 회사법 제187조에는 갚아야 할 내역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외자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 합자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 합작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에는 재산분배사항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법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반법(회사법)보다는 특별법(외상투자기업법)이 우선하므로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만약 해석상의 모호함이나 중국 주무관청이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원기관의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5. 청산 · 파산 절차

### 청산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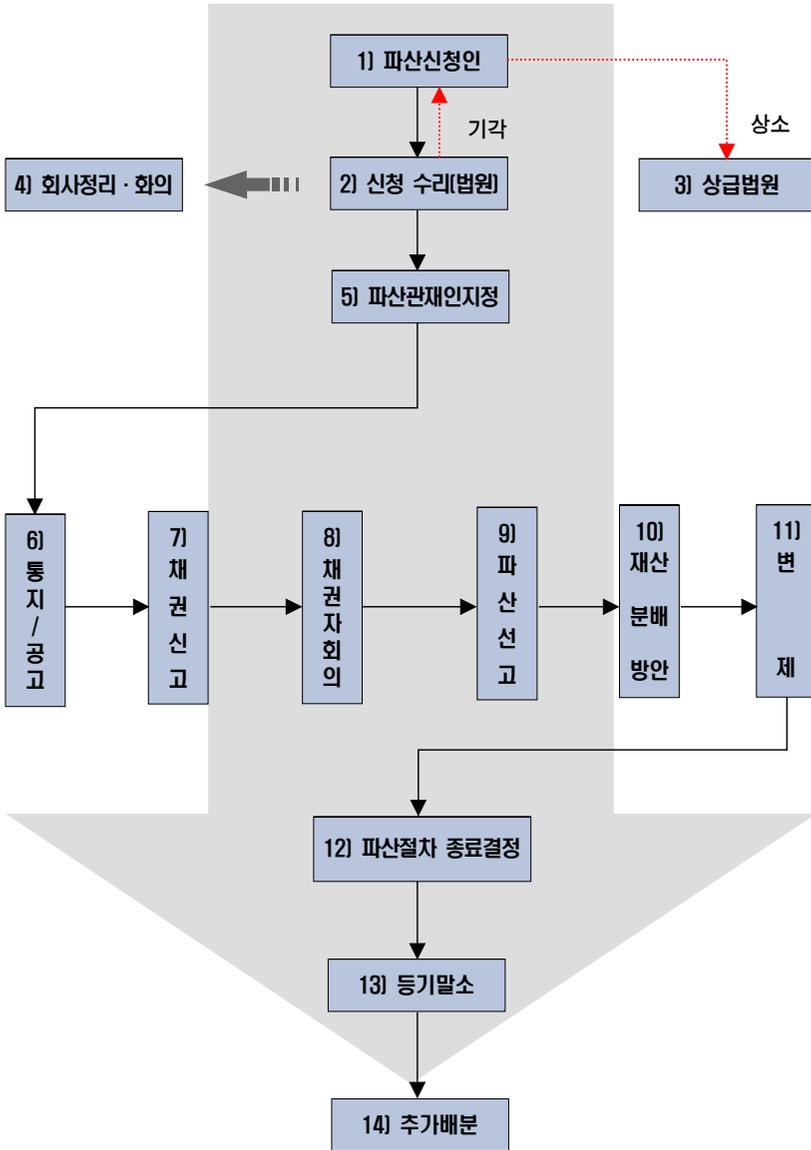


\*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0장

## 청산 절차

번호	사 항	법률규정	설 명
①	해산사유 발생	회사법 181조, 18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에 정한 영업기한 만료 또는 정관에 정한 기타 해산사유 발생</li> <li>-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li> <li>- 회사합병 또는 분리로 인한 해산의 필요성</li> <li>- 회사의 경영관리가 심각하게 곤란하여 계속적으로 존속할 경우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가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주주의결권 10%이상을 가진 주주가 인민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li> </ul>
②	청산인회(회사)	회사내 청산인회 조직	- 해산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립
		회사법 184조	- 유한회사 = 출자자(股東) - 주식회사 = 이사(董事) 또는 주주총회(股東大會)에서 선임한 자
		외자기업법실시세칙 74조	- 법정대표, 채권자대표, 주관기관대표로 조직 - 중국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초빙하여 참가
		합자기업법실시조례 92조	- 이사(董事) 중 선임 - 이사(董事) 중 선임이 곤란할 경우, 중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선임도 가능. 심사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견 감독③
③	청산인회(법원)	법원에서 청산인회 조직	- 회사자체내에서 청산인회를 15일 이내에 조직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조직함
		회사법 184조	- 법원에서 지정함
④	통지/공고	회사법 186조	- 청산인회 성립일로부터 10일내 채권자에게 통지 - 60일 이내에 공고
		외자기업법실시세칙 73조	- 회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채권자에게 통지
⑤	재산정리	회사법 187조	- 청산비용, 직원의 임금, 사회보험료, 법정보상금, 체불세금, 분배
		외자기업법 21조	- 청산완결전에 외국투자자는 기업재산에 대하여 처리할 수 없음
⑥	파산	회사법 188조	- 재산이 빚을 갚을 수 없을 경우 파산신청
⑦	청산보고서 제출	회사법 189조	- 청산완료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
⑧	청산완료	회사법 189조	- 청산완료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말소

# 파산 절차도



\*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파산법

## 파산 절차

번호	사 항	파산법	설 명
1)	파 산 신청인	7조	- 채무자 = 파산, 화의(和解), 회사정리(重整) 신청 - 채권자 = 파산, 회사정리(重整) 신청 - 기업의 청산인 = 빚이 많고, 값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에 파산 신청
2)	신청수리	3조, 12조	- 파산은 채무자 주소지 인민법원에 신청 - 법원은 파산신청 접수 후 5일내에 수리여부 결정
3)	상급법원	12조	- 기각된 재정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상급법원에 상소
4)	외사정리, 화의	70조, 95조	- 회사정리, 화의 = 파산선고 전에 신청이 가능
5)	파산관재인 지명	22조	-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지정
6)	통지/공고		- 법원은 파산신청수리일로부터 25일내에 확인된 채권자에게 파산관재인 지정사실 통지 및 공고
7)	채권신고	45조	- 법원이 파산신청 수리 후 30일 이상 ~ 3개월 미만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하고, 채권자는 지정기간내에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재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함
8)	채권자회의	62조	- 채권자회의는 채권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이 소집하고, 그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파산관재인, 채권자위원회, 채권총액의 25% 이상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자회의를 제안하여 개최
9)	파산선고	107조	- 법원이 채권리스트를 확정하고, 채무자가 회사정리, 화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각 당한 경우 법원은 그 기업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함 - 파산선고를 재정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채무자와 파산 관재인에게 송달하고 재정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함
10)	파산재산 분배방안	115, 116조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산분배방안을 작성하고, 채권자회의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11)	파산재산 변제	109조, 113조	- 1순위: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우선 변제함 - 2순위: 담보채권 - 3순위: 미지급된 직원의 임금과 의료상의 보조금, 위자료, 종업원 개인계좌에 이체하여야 할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 등 - 4순위: 미지급된 사회보험금과 체불세금 - 5순위: 일반파산채권
12)	파산절차 종료	120조	-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파산 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파산종료청구를 하고, 법원은 청구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종료여부를 결정함. - 위 파산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와 모든 채권자가 합의한 경우 · 채권이 모두 상환되거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파산자가 분배할 재산이 없는 경우 · 파산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
13)	등기말소	121조	-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 종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의 파산종료결정서를 지참하고 등기말소를 함
14)	추가배분	123조	- 파산재산의 분배 후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 배분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 완료 후 2년내에 채무자가 법률에서 정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익을 얻은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분을 신청할 수 있음

## 6. 청산과 관련한 중국의 주무 관청

- 우선 우리나라지원기관과 상의하여 청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청산을 직접 하실 것인지 아니면 대리기관에 위임하여 하실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산과 관련한 주무관청, 소요기간, 준비서류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국관청으로 한번 가 보실까요!

### ① 제일 먼저 상무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기업이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변경 또는 청산을 할 때 반드시 상무국(商務局,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름)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무국에 신청서, 이사회결의서, 비준증서 원본, 영업집조 사본을 제출하시면 내부규정상 3개월이 소요되나, 실무적으로는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② 다음엔 신문사로 가셔야 합니다.

상무국의 증서를 신문사(中國信息報, 工商時報 등)에 제시하고, 공고를 합니다. 법정 공고기간은 45일이고, 실무적으로는 45일동안 기다리지 않고 공고된 신문을 관련 주무관청에 제시하면서 관련 다른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역마다 공고기간을 준수하는 곳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 ③ 이젠 세무국(국세, 지방세)입니다.

회사경리가 세무신고를 꼬박꼬박 하셨다고요! 그럼 세무국에 신청서, 이사회 결의서, 영업집조 복사본, 최근 3년간의 납세보고서, 상무국의 말소증서, 청산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2개월 정도 후에 말소가 됩니다.

### ④ 걱정했던 세무국이 패스되면 외환관리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외환관리국에 신청서, 외환등기증 원본, 상무국 말소증서, 험자보고서, 세무 말소비준서 등을 제출하시면, 20일 후에 말소가 되나, 실무적으로는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외환등기증 말소 후 7일 내에 자본금계좌를 말소하시면 됩니다. 계좌말소는 즉시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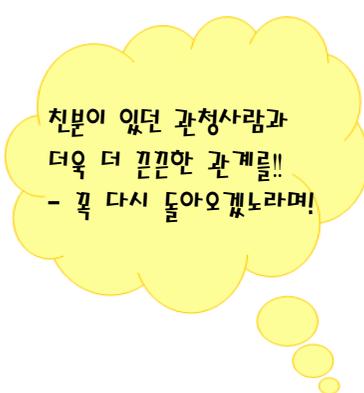
### ⑤ 이젠 세관에 가셔야 합니다.

세관에는 신청서, 이사회결의서, 영업집조 복사본, 상무국 말소증서, 통관 증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⑥ 공상행정관리국 말소등기 및 기타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법인등기기관인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서 각 관청에서 수령한 말소 증서와 신청서 및 회사관련 문건들을 제출하시면 7일 후에 회사가 소멸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정국, 통계국, 기술감독국, 공안국에 가서서 말소신청을 하면 즉시 나옵니다.

- 
- 거쳐야 할 기관이 왜 이리 많냐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기관들이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 다 거쳤던 곳입니다. 지역에 따라 회사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나 시간 및 관청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친분이 있던 관청사람과  
더욱 더 끈끈한 관계를!!  
- 꼭 다시 돌아오겠노라며!



# II

## 청산 사례

- 7. 산동성 기업
- 8. 광둥성 기업

## 7. 산동성 기업

### ● 청도에 인민폐 150만 위안짜리 회사 설립

1997년, 최사장은 청도개발구에 기술과 출자금(인민폐 150만 위안)을 투자하여 기계부품 생산업체를 설립하였다. 당시 외자기업 유치에 안달하던 청도정부로선 최사장에게 세금 및 공장부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다. 최사장은 호인에 가까운 성격과 성실한 인품 및 신뢰감을 바탕으로 현 정부 관계자들과 돈독한 ‘관시(關係)’를 쌓았음은 물론이다.

### ● 최악의 사업환경과 인민폐 200만 위안의 빚

수출 및 내수를 바탕으로 건실하게 운영되던 회사는 한국경기의 침체와 중국내 외자, 내자기업의 제품도용, 인력난과 임금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원인으로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예전에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을 해 나갔는데, 동시에 여러 개가 한번에 터지다 보니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었다. 결국 거래처에게 대금지급을 연체하게 되었고, 수도료와 전기요금, 직원들의 임금 및 토지 임대료 등을 지불하지 못해 다른 중국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달마다 밀린 대금 및 임금을 지불하느라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인민폐 200만 위안의 부채가 생겼고 이러한 상황은 점차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매일 전전긍긍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 궁지에 몰린 최사장의 최상의 선택 “청산”

최사장은 현 상황에서 사업을 살린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합법적으로 빚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청산이라고 판단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이사회는 이사라 해 봐야 다들 친척들이라 청산은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

### ● 대행업소에 위임함

회사법 및 공상행정관리국에 등재된 청산인은 최사장이므로 그가 청산을 맡아 하여야 하나, 직접 청산을 이행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대행업체에 위임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 **대행업소의 업무진행 및 청산재산 인민폐 200.5만 위안**

대행업소는 소재지 상무국의 비준, 중앙지 신문에 공고, 공고기간동안 청산할 만한 재산정리, 세무국 말소 및 회계사무소에 위탁하여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청산보고서 작성 후에 청산재산이 토지사용권, 공장건물, 기계 설비 및 트럭 2대, 사무실 기자재, 직원 숙소용 건물 1동, 제 2 공장부지, 공장에 남아 있는 재고 등을 합해 약 200.5만 위안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

● **재산변제순위에 따른 분배**

대행업소는 청산비용과 지불하지 않은 직원 40명의 임금과 보험, 경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체납한 세금과 그 동안 편의를 봐서 빚을 독촉하지 않은 중국 친구들의 부채를 모두 갚았다.

● **인민폐 20만 위안의 소송에 휘말림**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악의를 품어 산재를 이유로 인민폐 20만 위안의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에 소송하여 직원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보상금은 지불하지 않게 되었다.

● **파산은 새로운 출발(Fresh start)**

떠나기 전 공장직원들은 어려운 경영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껏 버텨준 최사장과 임금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해왔으며 그 동안 신의로 관계를 유지해 온 정부 관계자들 또한 다시 중국에 투자를 할 기회가 있으면 발 벗고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 **서바이벌시대 ‘청산’으로 재기하라**

2년 후, 중국 산동성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던 최사장은 그 당시 정부 관계자와 중국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 8. 광동성 기업

### ● 광주에 미화 50만불짜리 회사 설립

한국 A회사는 2003년 중국의 광주에 의류업체를 설립하였다. 2003년 11월 A회사의 박사장은 출자금 납입방식은 미화 50만불로 하고, 회사 설립 후 3개월 내에 15%이상을 납입하고, 나머지는 1년 내에 완납하는 것으로 하였다. 2004년 3월에 영업집조를 수령하고, 그 해 5월에 자본금 30만불을 납입하고, 기계설비 구입 및 직원을 채용하여 공장을 가동하게 되었다.

### ● 본사의 법정관리로 인한 경영의 악화 및 재무상황

2005년 1월 한국 A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영업라인이 끊어졌다. 공장은 경영상의 악화로 재고만 넘쳐났다. 2005년 4월, 한국 A회사의 파산관재인은 대행업소를 통해 재무상황을 보고 받은 후, 청산을 신청하였다. 한국 A회사가 보고 받은 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만RMB)

구 분	현금 자산	재고 자산	고정 자산	직원 봉급	직원 경제보상금	자재외상
1	14	21	25	12	12	16
자산합계	60			부채합계	40	

### ● 청산은 스킬이다.

2005년 6월 K사장은 대행업체를 통해 청산을 하고, 외환관리국에 말소신청을 하면서 남은 재산 인민폐 20만 위안을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송금하였다.

### ● 파산으로 간다하여도 손해 볼 일은 없다.

한국 A회사 파산관재인은 만약 의외의 부채가 있어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중국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파산으로 간다하여도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한해 유한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와 중국법원에서 알아서 한다는 점 그리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손해 볼 장사는 아니었다.

# Ⅲ

## 청산의 주요 Q&A

기본 정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 기본 정보

### (9) (정의) 청산은 무엇이고, 해산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은 흔히 청산과 해산을 무심코 사용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청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을 하다가 사업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는데 이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해산은 무엇인가요?

해산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회사가 사업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해산에 의한 것이라면 '해산에 의한 청산'이 되는 것이고, 파산에 의한 것이라면 '파산에 의한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청산을 통해 회사를 완전하게 소멸시켜야 합니다.

(10) (당위성) 청산은 꼭 해야만 하나요?

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통해서만이 실현가능  
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산을 한다면 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즉, 다른 사람  
들이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회사의 명의를 도용할 가능성이나,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민·형사책임을 한국 또는 중국에 청구할 가능성이나,  
세금, 노동 문제 등의 행정책임, 그리고 장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해질 수 있는 제재로부터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적법하게 경영해 온 사업자는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청산, 더 뜨겁고 간절한  
사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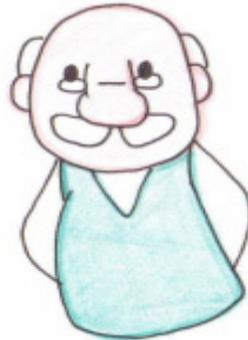
**(11) (사유)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청산하면 되는 건가요?**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법 제181조, 제183조에는 ① 회사정관상의 영업기한이 만료가 된 경우 ② 회사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사원총회(股東會) 또는 주주총회(股東大會)가 결의한 경우, ④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리로 인하여 청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⑤ 회사의 영업 집조가 취소·철회(吊銷)되고, 폐업(關閉) 명령을 받은 경우, ⑥ 회사가 경영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해서 존속할 경우 출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회사가 위의 사항에 해당되어 청산에 직면한 경우,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상의하여 청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유없는~  
청산은 없다!!



**(12) (청산인) 남에게(전문경영인, 변호사) 위임해서  
청산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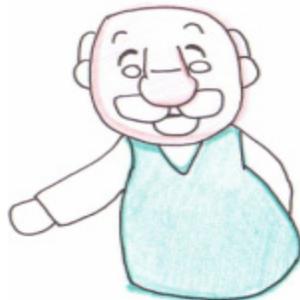
네, 남에게 위임해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청산인은 회사형태와 청산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유한 회사는 출자자(股東)가 하고, 주식회사는 이사(董事) 또는 주주총회(股東大會)에서 정한 자가 합니다. 또한 청산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선임한 자에 의해 청산을 하게 됩니다(회사법 제184조).

실무적으로 종업원 수가 많지 아니한 기업들은 직원을 통해 직접 청산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업원 수가 30여명 이상이 되는 기업은 노동, 보험, 재산처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치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우선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상담을 한 후 회사 상황에 따라 전문 대행업소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까.

따라서 회사의 청산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을 쓰는 것도~  
탁월한 전략이다!!!!**



(13) (정산이 아닌 방법) 정산을 해야 하는 회사가  
M&A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아뇨,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정산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던 회사를 누군가가 인수하고자 하여 그 회사를 넘겨 주었다면 이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단, 그러한 행위가 지연되거나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청산 또는 파산신청을 한다면 이는 복잡한 문제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을 해야 하는 회사가 청산을 하지 않고, 회사의 지분을 유,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출자자를 변경하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의도적인 행위가 아닐지라도 그 시점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청산을 하지 않고도 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은 스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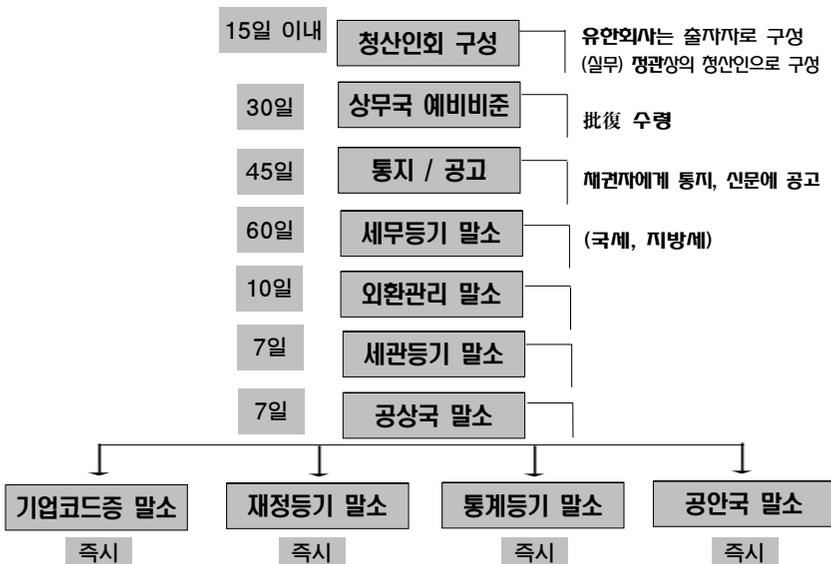
**(14) (청산절차) 청산인이 약 4개월 동안 처리해야 할 업무는 무엇인가요?**

청산은 실무적으로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4개월 동안 청산인이 하는 업무는 청산재산을 정리하고 처리해서 분배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만약 돈이 될 만한 재산도 없고, 채무도 없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무관청과 관련된 업무는, 상무국에서 비준 받는 시간(실무적으로 약 1개월), 신문에 공고하고 기다리는 시간(45일), 세무국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시간(실무적으로 약 2개월) 및 휴무일 등을 감안하면 실무적으로 약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아래표 참조). 이 기간은 지역 및 회사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청산업무는 주로 주무관청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15) (재산변제순위) 회사의 재산은 어떤 순서로  
분배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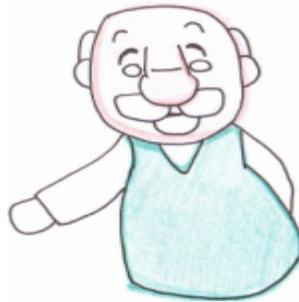
파산과 달리 청산의 재산변제는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법 제187조에 따라 우선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정리를 해서 청산회사를 관리하는 데 지출했던 청산비용부터 갚고, 그 다음으로 직원들 급여를 준 다음에, 직원들 계좌에 이체되어야 할 기본보험료 (기본의료, 기본양로)를 지급하고, 법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할 돈들, 그리고 밀린 세금들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줄 돈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지 모릅니다.

만약 위의 비용도 지급할 만한 돈이 없다면 파산절차에 의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그가 판단 하기에 파산비용도 못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종료를 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제도는 적법한 회사설립과 합법적인 회사 운영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콩 한조각도 나눠라!



### (16) (세금반환) 청산을 하면 이제까지 누려온 세금혜택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네, 반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기업이 장려업종, 생산성기업, 첨단기업, 특구지역 등에 의하여 그 사업기간이 10년 미만인 회사가 2면3감반(2년 동안 세금 면제해 주고, 3년 동안은 50%감면) 법인세 혜택을 받은 회사 또는 면세설비가 들어 온 일자로부터 5년 미만인 회사가 관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은 회사는 그 면제, 감면 받은 세금을 모두 주무관청에 환수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기업들이 청산을 하기 전까지 누려 온 위와 같은 세금혜택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반환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반환할 돈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지 모릅니다.

만약 위의 반환비용도 지급할 만한 돈이 없다면 파산절차에 의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그가 판단하기에 돈이 한푼도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종료를 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제도는 적법한 회사설립과 합법적인 회사운영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17) (영업) 장고에 쌓여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죠?

처분하시면 됩니다.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는 청산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청산인의 관리 하에 일괄적으로 처분하여 청산비용 및 채무변재 등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청산재산을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 경영활동에 기한 매매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청산중인 회사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나 그 재산을 숨기게 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고물품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의 재산처분은 중국정부, 근로자, 채권인 등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8) (비용) 청산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업을 그만두는 마당에 돈까지 써가며 청산을 해야 한다는 게 율화가 치밀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중국사업을 기약하기 위해 서라도 이 돈은 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비용내역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갑의 회사가 빛이 없고, 총 자산이 200만RMB인 경우, 청산비용은 = 200RMB (신문 광고비용) + 4,000RMB(공인회계사사무소 보고서비용. 그 기준은 총 자산의 약 2%정도. 지역과 자산에 따라 상이함) + 대리비용(대행업소 용역비)입니다.

만약 청산비용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지 모릅니다.

만약 위의 비용도 지급할 만한 돈이 없다면 파산절차에 의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그가 판단 하기에 파산비용도 못 나올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종료를 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제도는 적법한 회사설립과 합법적인 회사 운영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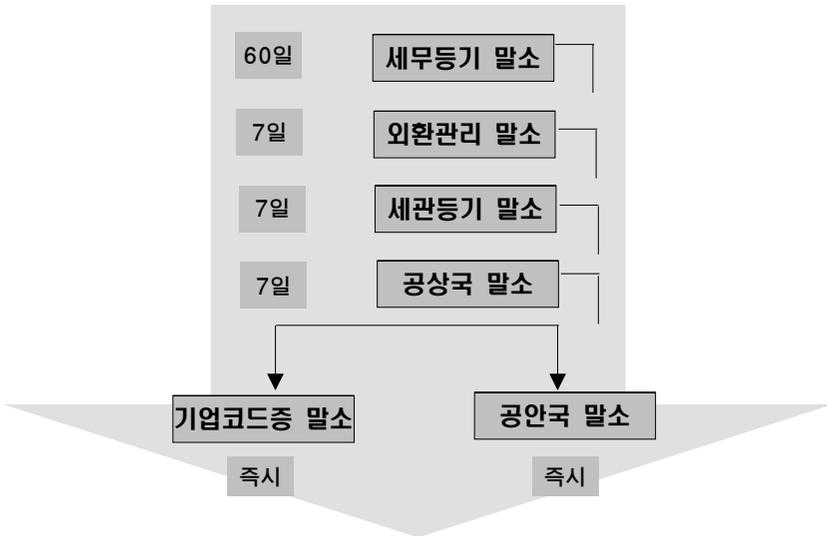
### (19) (대표처) 대표처도 청산을 하나요?

네, 반드시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처도 회사법의 청산절차에 따라 폐쇄를 하여야 합니다(회사법 198조). 대표처 폐쇄기간은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아래표 참조).

이 기간은 지역 및 대표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처 폐쇄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 중국에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송사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처 도장이나 문건들을 소중하게 보관 또는 처리하지 못하여 영업행위 또는 있지도 않은 채권들로 인하여 민, 형사상의 문제로 사건화 된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처 청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과 꼭 상의 하여 폐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20) (파산, 회사정리, 화의) 파산, 회사정리, 화의란 무엇인가요?

파산이라는 것은 재산보다 빚이 많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법원이 나서서 그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서 공정하게 빚을 분배하는 절차를 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으로 가는 경우는 처음부터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청산에 있는 회사가 뚜껑을 열어 보니 빚이 너무 많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파산으로 가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이 개입되어 모든 것을 처리하므로 우리 나라기업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회사정리(重整) 또는 법정관리는 부실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계약, 협의를 통해 회생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선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화의(和解)는 도산에 직면한 기업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빚을 갚는 시기와 금액 및 이율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 회사의 회생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계약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법정관리, 화의, 파산 중의 하나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만약 이에 대한 결정여부가 곤란하실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원기관 및 전문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1) (애로사항) 중국정부에서 청산, 파산을  
안받아주면 어떻게 하나요?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기업이 해산에 의한 청산이나 파산사유에 의한 청산을  
진행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무관청에서 청산을 받아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원기관에 협조요청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상의하여 사법기관을 통한 해결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지만 말고,,  
행동하라~



## 잘못 알고 있는 정보

(22) (취소, 철회) 영업집조가 吊銷(철회 또는 취소)되면 자동으로 청산된 거라 하던데?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는 틀린 사실입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영업집조 吊銷(취소 또는 철회)처분을 받은 것과 청산을 통해 영업집조를 注銷(말소)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吊銷(취소 또는 철회) 처분을 받은 것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 회사가 완전하게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영업할 수는 없는 상태이나, 법률적으로는 존재하는 회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산을 통해 영업집조를 注銷(말소)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킨 것으로서 그 회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집조 吊銷(취소 또는 철회)처분을 받으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어 청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3) (체불금) 회사의 체불된 세금, 임금 등을  
꼭 갚아야 청산이 완료된다고 하던데?

아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법 제187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정리 처분하여 청산 비용, 직원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법정정보상금, 체불된 세금, 회사채무 등을 갚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청산중인 회사의 재산을 정리해서 위의 사항을 갚으시고 청산을 완료한 다음 회사를 말소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체불된 세금, 임금 등을 줄 돈마저도 없다면 파산절차에 의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정된 후 그가 판단하기에 돈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산은 완료됩니다. 단, 이러한 제도는 적법한 회사설립과 합법적인 회사 운영을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갚지 못한다면 파산이  
해결돼 준다

(24) (지급불능, 채무초과) 빚은 많고 갚을 돈이 없으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진다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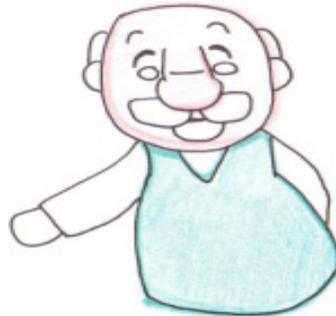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한 한도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의 빚이 많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은 파산제도를 마련하여 청산중인 회사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을 하여 파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빚이 많고 갚을 돈이 없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로부터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청산 제도를 우리나라 지원기관과 상의하여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게 죄가 아니듯,  
청산은 죄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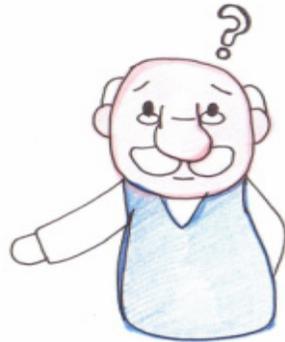
(25) (출국금지) 회사의 관계자들은 청산이 끝날 때까지 한국으로 갈 수 없다고 하던데?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청산 절차 중에 있다고 하여 회사와 관계있는 인원들이 출국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법원의 결정과 통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적법하게 회사를 설립, 운영한 회사가 단지 청산 절차 중에 있다고 하여 그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청산하면 출국금지” 라는  
그런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26) (감금) 채권자, 노동자가 회사관계자를 감금하는 것은 정당한 자구행위라고 하던데?**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헌법 제37조와 형법 제238조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남을 감금하여 그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범죄행위(불법감금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산에 있는 사람들이 청산회사의 특정인들을 감금하거나 물리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한 민,형사상 범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중국사법기관 및 우리나라 지원기관에 협조요청을 구하여 정당한 권리주장을 통한 법적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자구행위는  
합법인가?**





# IV

## 참고 자료

- 
- 27. 주요 청산 지원 연락처
  - 28. 체크 리스트
  - 29. 용어 정의

## 27. 주요 형산 지원 연락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기업청산법률지원센터”

139-1006-7188

주칭다오총영사관  
“기업청산지원데스크”

139-5326-7308

비정상 청산! 그 유혹으로부터의 해방~  
순리 청산의 반력자!!



## 28. 체크 리스트

### 1. ONE STEP

청산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들

번호	체크사항		비고
1	기간	정관상 경영기간의 만료시점에 달한 경우	
2	불가항력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직면한 경우	
3	적자	사업이 계속적으로 적자인 경우	
4	출자금	출자금을 적시에 출자할 수 없는 경우	
5	의결	의결권자에 의한 해산결정이 필요한 경우	
6	M&A	인수합병 또는 분리에 따라 청산이 필요한 경우	
7	취소, 철회	인허가증의 취소 및 철회	
8	대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9	체불	직원급여 또는 세금 등이 체불된 경우	
10	채무	기한이 경과한 빚이 많은 경우	
11	특정허가	특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12	연도검사	연도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휴업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아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국인의 명의(차명)로 회사를 설립하고, 위 체크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우리나라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위 체크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③	허위적인 자료 또는 기타 수단으로 주요 사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위 체크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④	우리나라기업 또는 개인이 가장납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임직원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위 체크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⑤	영업집조 및 기타 증서들을 위조, 도용, 임대, 대여, 양도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체크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2. TWO STEP

청산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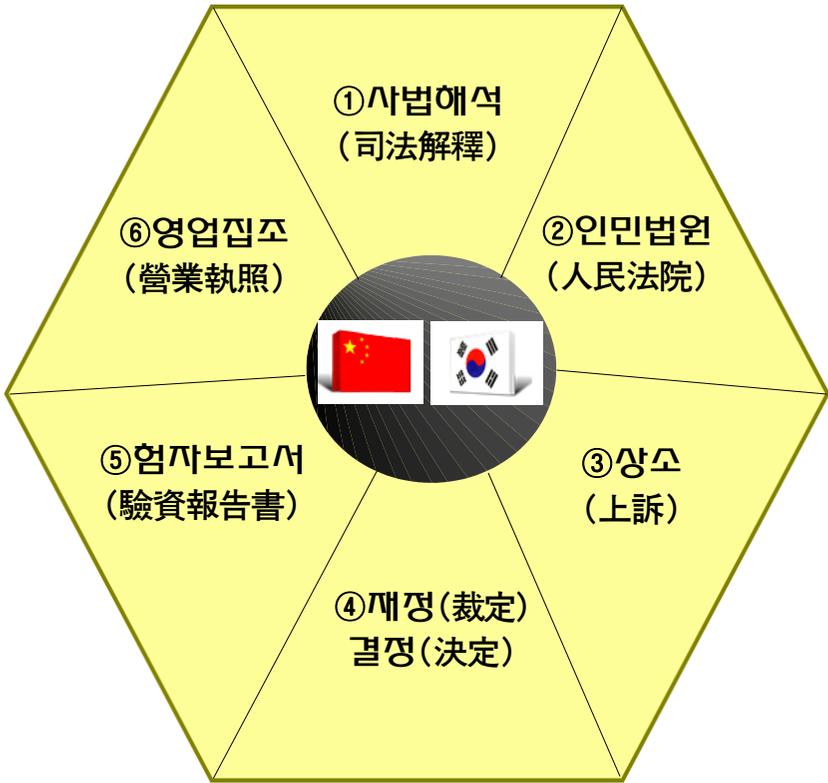
번호	체크사항		비고
1	통지	법정기간에 채권인에게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2	공고	청산사항을 공고하였는지의 여부	
3	상환	채권자 접수기간내에 채권을 상환하였는지의 여부	
4	청산방안	청산방안을 주주총회 또는 법원에 확인하였는지 여부	
5	분배	회사재산을 법에 정한 바대로 분배하였는지 여부	
6	영업	청산기간내에 청산과 관련 없는 경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7	우선분배	청산기간내에 회사재산을 순위대로 상환하기 전 주주에게 우선 분배하였는지의 여부	
8	청산 보고서	청산보고서를 주주 또는 법원에 확인하였는지의 여부	
9	말소등기	청산보고서를 공상국, 세관, 세무서 등 기관에 제출하고 말소등기를 하였는지의 여부	
10	면세설비	면세설비가 있는지의 여부	
11	세금혜택	세금혜택을 받았는지의 여부	

### 3. THREE STEP

파산하면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

번호	체크사항		비고
1	양도	파산신청 1년전에 재산을 무상 양도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2	거래	파산신청 1년전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으로 거래한 적이 있는 지의 여부	
3	담보	파산신청 1년전에 담보가 없는 채무에 담보를 설정하였는지의 여부	
4	채무상환	파산신청 1년전에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를 사전에 상환하였는지의 여부	
5	채권포기	파산신청 1년전에 채권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6	채무상환	파산신청 6개월전에 파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였는지의 여부	
7	재산이전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이전하였는지의 여부	
8	출자금	출자금 완납여부	
9	횡령	임직원의 회사재산 횡령여부	
10	조작/거짓	채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진실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 29. 용어 정의



## 용어 정의

<p><b>① 사법해석</b> (司法解釋)</p>	<p>사법해석(司法解釋)이란 소송실무의 운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으로서 중국의 민사소송운영은 민사소송법 규정보다 오히려 사법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하급인민법원의 질의에 대한 회답(批复)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나, 중요한 것들은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제정하여 외부에 공포합니다. 사법해석은 대부분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하여 공포하지만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한 사법해석은 국무원, 사법부 등에서도 공포하기도 합니다.</p>
<p><b>② 인민법원</b> (人民法院)</p>	<p>중국에서는 법원을 우리나라와 달리 ‘인민법원(人民法院)’이라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중국 ‘인민법원(人民法院)’을 ‘법원’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p>
<p><b>③ 상소</b> (上訴)</p>	<p>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당사자가 제1심 판결 또는 재정(裁定)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을 모두 ‘상소(上訴)’라 합니다.</p>
<p><b>④ 재판(裁定) 결정(決定)</b></p>	<p>중국의 재판에는 판결(判決), 재정(裁定), 결정(決定)이 있습니다. 재정(裁定)이란 인민법원이 민사, 형사절차중의 각종 절차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내리는 기속력 있는 결론적인 판단(예: 수리거부, 이송, 보전처분 등)을 말합니다. 결정(決定)이란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소송절차 중에 발생하는 장애 또는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해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기속력 있는 결론적인 판단(예: 회피신청의 처리, 소송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 소송방해행위의 처리 등)을 말합니다. 재정(裁定)은 법이 상소를 허용하는 경우 상소할 수 있으나 결정은 상소를 할 수 없습니다.</p>
<p><b>⑤ 험자보고서</b> (驗資報告書)</p>	<p>‘험자보고서(驗資報告書)’란 기업이 법인을 설립한 후 출자금을 회사계좌로 납입하고, 회계사사무소에서 은행의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돈이 얼마 들어 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험자보고서를 근거로 회사설립 시 발부한 영업집조(3개월 또는 6개월)를 정식 영업집조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p>
<p><b>⑥ 영업집조</b> (營業執照)</p>	<p>중국의 ‘영업집조(營業執照)’는 사전적인 의미상 ‘사업자등록증’에 해당됩니다. 단, 중국의 영업집조는 우리나라의 세무국에서 발부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원에서 발부하는 ‘법인등기부’와는 구별되므로 여기에서는 ‘영업집조’라 표기하였습니다.</p>



## 알기 쉬운 중국의 청산제도

**발행일** | 2008년 4월 10일

**발행처** | 주중국대사관 경제부

(발행간사: 서민정 1등 서기관)

전 화: 86-10-8531-0700

팩 스: 86-10-8531-0815

이메일: [economy@koreanembassy.cn](mailto:economy@koreanembassy.cn)

홈페이지: [www.koreaemb.org.cn](http://www.koreaemb.org.cn)

**인 쇄** | (주)범 신 사

전 화: 02) 720-9786~9

